

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-0842호

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(키오스크) 시험평가기관

지정 신청 공고

「디지털포용법」 제23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25조, 「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-43호)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(키오스크) 시험평가기관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07. 30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

☎ 문의 및 접수처 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접근성팀
(bfsupport@kioskux.com, 053-230-1380/1378)

※ 제출서류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. 신청 분야 :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(키오스크) 시험평가기관

2. 지정 분야 : 키오스크(무인정보단말기)

※ 「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」 제17조 및 별표4에서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품목으로 고시한 '키오스크(무인정보단말기)' 유형

3. 신청 기간 : 2026. 08. 18.(화) ~ 2026. 08. 28.(금) 14:00까지

4. 신청 자격 : 「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제8조의 시험평가기관 지정요건*을 갖춘 기관(컨소시엄 구성 불가)

* 자세한 요건은 동 고시의 별표4(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), 별표5(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)를 참조

5.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

가. 신청방법

- '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신청서'(붙임) 및 구비서류 제출

나. 신청서 구비서류

- 1)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각 1부
- 2)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각 1부
- 3) 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시험평가원(2인 이상) 및 사용자시험평가관리원(1인 이상)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가)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
(나) 해당 전문분야의 학력 및 경력 증명서
(다) 재직증명서, 4대보험 납부확인서
- 4) 사용자시험평가를 위한 비전문가 사용자평가원* 12인 이상의 비상주인력 풀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* 1) 비장애인(20~40대) 3인 이상
2) 전맹시각장애인 2인 이상
3) 저시력시각장애인 2인 이상
4) 휠체어사용 상지지체장애인 1인 이상
5) 휠체어사용 뇌병변장애인 1인 이상
6) 청각·언어장애인 1인 이상
7) 고령자(65세 이상) 2인 이상

- 5)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아래의 환경 및 조건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(가)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전문가심사가 가능한 공간 보유(건축물대장(임대계약서))
 - (나)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사용자심사가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
 - (다) 온라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
 - (라)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HW, SW 등 보유
- 6)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 업무처리 규정
 - (가) 시험평가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
 - (나) 시험평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
 - (다) 시험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
 - (라)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사항
 - (마) 시험평가 절차 및 시험평가원의 보안관리 사항
 - (바) 시험평가원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
 - (사) 시험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 - (아)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 - (자) 분쟁처리절차 및 조치방법,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
 - (차) 기타 시험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
- 7) 지능정보제품 관련 개발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- 8) 사업계획서(향후 3년간 계획)(예시)
 - (가) 기관현황(개요/조직/시설 및 설비 등)
 - (나) 지능정보제품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
 - (다) 시험평가원 구성 현황
 - (라) 주요 사업 추진내용(사업의 취지/목표/범위/절차/전략/세부 내용 등)
 - (마) 시험평가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(사업지원 계획/관리계획)
 - (바)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방안(시험평가 사업(전문가/사용자/모니터링),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 향상 방안, 품질 향상 방안, 시험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, 수수료 책정 방안 등)
 - (사) 시험평가사업 기대효과
- 9)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
- 10) 법인등기부등본

다. 신청시 유의사항

- 1) 심사결과 발표 이후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「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제9조에 따라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2) 접수된 시험평가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3)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임

6. 지정(심사) 절차 및 방법

가. 심사 절차 : 3단계 심사(서류심사, 현장심사, 발표평가)를 통한 시험평가기관을 지정을 심사

- 1) (서류심사) 법인이요건 및 사업목적, 조직 및 인력, 설비에 대한 적합/부적합 심사
- 2) (현장심사) 시험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, 인력(상주, 비상주), 설비 등에 대한 확보 여부와 인력·조직·설비 관리·운영 등 내부규정 확보 여부에 대한 일치/불일치 심사
- 3) (발표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업무수행 규정을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

나.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일정은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

7. 문의 및 접수처 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접근성팀

(☎ 053-230-1380, 053-230-1378)

- 접수 방법 : 전자파일 이메일 접수(bfsupport@kioskux.com)

※ 오프라인 접수 불가, 발표평가 시 발표자료(인쇄본) 별도 제출 안내

붙임

신청서 양식

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대표자		

「디지털포용법」 제21조제3항 및 「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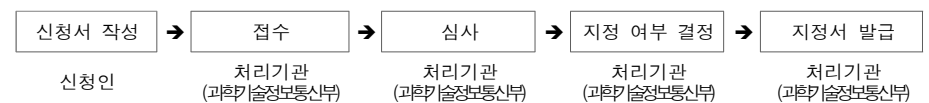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. 사업계획서 3. 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